시보

서	기관의 장
선	
람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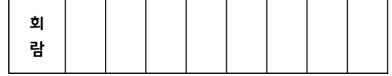
all ways INCHEON

제2241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24년 5월 20일 월요일

	고	시			
0	인천광 고시 …	역시고시	제2024-116호	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1-16호선, 대2-9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	2
0	인천광	역시고시	제2024-117호	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	5
0	인천광((변경)	역시경제 승인 및	자유구역청고시 지형도면 고시	제2024-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(B) 실시계획	6
_	(Ū
	공	고			
0	인천광	역시공고	제2024-1269를	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	30
0	인천광	역시공고	제2024-1270호	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	31
0	인천광	역시공고	제2024-1272호	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	32
0	인천광 독촉 공	역시경제 3시송달	자유구역청공고 공고	. 제2024-185호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납부	33
0	인천광역	역시종합 [:]	건설본부공고 제	2024-227호『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』손실보상계획 공고 …	34
0	인천광	역시종합	건설본부공고 기	데2024-23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5월)	39
0	인천광	역시종합	건설본부공고 기	톄2024-23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(5월)	42
	입법(계고			
	인천광역	역시입법(예고 제2024-44	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45
0	인천광역	역시입법(예고 제2024-45	호 인천애(愛)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59

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공보담당관실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-69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(B)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-415호(2021. 10. 12.)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(B) 실시계획을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05월 20일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

◈ 변경사유

- O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(토지이용계획, 지구단위계획(가구 및 획지 등) 변경)
- ◈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
- 1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(변경없음) 가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: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(B)

나.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

구 분	위 치	사업시행자							
신항물류단지(B)	10공구	○ 해양수산부	○ 인천항만공사	○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					

2.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(변경)

가. 개발사업의 목적(변경 없음)

나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			전 🤊	।	
	구 분		면 적(m²)		구성비(%)
		기 정	변 경	변경후	T'8 PI(%)
	합계	3,106,000.0	3,106,000.0	_	100.0
ᅽ	l합물류 및 제조시설	1,307,409.0	1,307,382.2	감 26.8㎡	42.1
	업무·편의시설	109,372.0	109,371.8	감 0.2㎡	3.5
	공공시설	1,689,219.0	1,689,246.0	증 27.0㎡	54.4
	도로	503,067.0	503,093.3	증 26.3㎡	16.2
	공원 및 녹지	183,574.0	183,578.2	증 4.2㎡	5.9
	공공청사	29,839.0	29,836.5	감 2.5㎡	1.0
	주차장	12,930.0	12,929.0	감 1.0㎡	0.4
	변전시설	2,635.0	2,635.0	_	0.1
	항만('컨'부두)	957,174.0	957,174.0	-	30.8

※ 기정 :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-415호(2021.10.12.)

3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(변경없음)
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

나. 면 적 : 3,106,000 m²

4. 개발사업 시행기간(변경없음)

가. 2017년 ~ 2030년(14년간)

5.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(변경 없음)
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) [붙임 1]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[붙임 2]
- 8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(변경 없음)
- 9.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 (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시항을 포함)에 관한 계획서(변경 없음)
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제2항 따라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(개발계획총괄과, ☎032-453-7824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[붙임 1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1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
□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	
	丁 七	기정	정 변경 변경후		T'8 H(%)	H177
	합 계	3,016,000	-	3,016,000	100.0	
7070	소 계	3,106,000	-	3,106,000	100.0	
공업지역	준공업지역	3,106,000	-	3,106,000	100.0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
구	도면 표시	구 역 명	위 치		면 적 (m²)	최초	刊	
분	변호 번호	T # 78	· 귀 시	기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고
기 정	1	신항물류단지(B) 내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부	3,106,000	-	3,106,00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-87호(2013.4.1)	
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교통시설

1) 항만

□ 도시계획시설(항만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	도면	.1 .1	시설	A) 53		면 적(m²))	최초	刊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의 종류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고
		계		-	3,106,000	_	3,106,000	_	
기정	1	항만 (신항B)	무역항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	3,106,000	-	3,106,00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-87호 (2013.4.1)	

□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u	도면	.11.1.1.1.1.1.1	A) *)		면 적(m²)		최초	비
구분	표시 번호	세부 시설명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고
계				3,106,000	-	3,106,000		
변경	1	항만배후단지 (물류·제조시설)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	1,307,409.0	감) 26.8	1,307,382.2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변경	2	항만배후단지 (업무·편의시설)	"	109,372.0	감) 0.2	109,371.8	"	
변경	3	항만배후단지 (도로)	"	503,067.0	증) 26.3	503,093.3	"	
변경	4	항만배후단지 (공원)	"	60,283.0	증) 0.6	60,283.6	"	
기정	5	항만배후단지 (녹지)	"	123,291.0	증) 3.6	123,294.6	"	
기정	6	항만배후단지 (변전시설)	"	2,635.0	-	2,635.0	"	
기정	7	항만배후단지 (공공청사)	"	29,839.0	감) 2.5	29,836.5	"	
변경	8	항만배후단지 (주차장)	"	12,930.0	감) 1.0	12,929.0	"	
기정	9	항만 (기능시설)	"	692,528.0	-	692,528.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-87호(2013.4.1)	
기정	10	항만 (지원시설)	"	264,646.0	-	264,646.0	"	

□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(변경)

713			면 적 (m²)		그 러니(0/)	יון יי
구분 		기정	변경	변경후	구성비(%)	비고
합계		3,106,000.0	-	3,106,000.0	100.0	
항만시설]	957,174.0	-	957,174.0	30.8	
기능시	설	692,528.0	-	692,528.0	22.3	
지원시	설	264,646.0	-	264,646.0	8.5	
항만배후단	<u></u> 기	2,148,826.0	-	2,148,826.0	69.2	
복합물류 및 제	조시설용지	1,307,409.0	감) 26.8	1,307,382.2	42.1	
업무 • 편의/	시설용지	109,372.0	감) 0.2	109,371.8	3.5	
공공시설	용지	732,045.0	증) 27.0	732,072.0	23.6	
5	로	503,067.0	증) 26.3	503,093.3	16.2	
공	원	60,283.0	증) 0.6	60,283.6	1.9	
녹	지	123,291.0	증) 3.6	123,294.6	4.0	
변전	변전시설		-	2,635.0	0.1	
공공	청사	29,839.0	감) 2.5	29,836.5	1.0	
주치	사장	12,930.0	감) 1.0	12,929.0	0.4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-7 Н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റിച്ച		면적(㎡)		 최초	비고
구분 			위치	기정	변경	변경 후	결정일	
기정	9	항만 (기능시설)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	692,528.0	-	692,528.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-87호(2013.4.1)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지원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راحا		면적(m²)		최초	비고
			위치	기정	변경	변경 후	결정일	
기정	10	항만 (지원시설)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	264,646.0	-	264,646.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-87호(2013.4.1)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- 도로 총괄표(변경없음)

	합 계				1 류			2 류			3 류		
류별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
	(개소)	(m)	(m^2)	(개소)	(m)	(m²)	(개소)	(m)	(m²)	(개소)	(m)	(m²)	
합계	23	14,687	503,067	3	1,372	42,215	13	10,649	366,127	7	2,666	94,725	
광로	4	3,844	190,587	_	-	_	2	2,494	132,459	2	1,350	58,128	
대로	14	8,597	268,907	1	797	28,210	8	6,484	204,100	5	1,316	36,597	
중로	5	2,246	43,573	2	575	14,005	3	1,671	29,568	_	-	_	

- 도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		규	모			~1 -1			21.0	ಎ೭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 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_		23개	노선		-	14,687	-	_	_	-	_
기정	광로	2	(신행B) 1	50	주간선도로	2,000	대로 2-신항B1	소로1-1	일반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기정	광로	2	2	50	주간선도로	494	대로 2-신항B1	신항물류 단지(A)	자동차 전용도로	/,	
기정	광로	3	1	40	주간선도로	553	대로 2-신항B1	신항물류 단지(A)	일반도로		
기정	광로	3	2	40	보조간선 도로	797	광로 2-신항B1	신항물류 단지(A)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1	1	35	보조간선 도로	797	광로 2-신항B1	시하무류	일반도로	"	

		ਜ	모			어가)1 Ó	귀 구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 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대로	2	(신행B) 1	30	보조간선도 로	1,012	소로1-1	광로 2-신항B1	일반도로	"	도시계획시설 (도로)중복결정
기정	대로	2	2	30	집산도로	1,119	대로2-8	대로2-1	일반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회(2019.5.20.)	
기정	대로	2	3	30	집산도로	667	광로3-2	대로2-8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2	4	30	집산도로	701	광로3-2	대로1-1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2	5	30	집산도로	824	대로2-8	대로2-2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2	6	30	집산도로	667	광로3-2	대로2-8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2	7	30	집산도로	697	광로3-2	대로1-1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2	8	30	집산도로	797	광로 2-신항B1	신항물류 단지(A)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3	1	26	집산도로	278	대로2-6	대로2-3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3	2	26	집산도로	171	중로1-5	중로1-3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3	3	26	집산도로	281	대로2-6	대로2-3	일반도로	"	
기정	대로	3	4	26	집산도로	293	광로 2-신항B1	대로2-6	일반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-415호(2021.10.12)	
기정	대로	3	5	26	집산도로	293	광로 2-신항B1	대로2-6	일반도로	"	
기정	중로	1	1	23	집산도로	293	광로 2-신항B1	대로2-5	일반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기정	중로	1	2	23	집산도로	282	대로2-5		일반도로		
기정	중로	2	1	16	보조간선 도로	295	대로2-8	신항물류 단지(A)	일반도로	"	
기정	중로	2	2	16	보조간선 도로	671	광로3-2	대로2-8	일반도로	1/	
 기정	중로	2	3	16	보조간선 도로	705	광로3-2	대로1-1	일반도로	"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기정	면적(㎡) 변경	변경 후	최초결정일	비고
변경	1	주차장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4,965.0	감) 0.5	4,964.5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 (2019.5.20.)	
 변경	2	주차장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4,965.0	감) 0.5	4,964.5	"	
기정	3	주차장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3,000.0	_	3,000.0	″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	도면		시설의			면적(m²)			
구분	구분 표시 / <u>번호</u>	시설명	종류	위치	기정	변경	변경 후	최초 결정일	비고
변경	1	공원	근린 공원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20,944.0	증) 0.6	20,944.6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기정	2	공원	체육 공원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39,339.0	I	39,339.0	"	

□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-,,	도면		시설의	A) =3		면적(m²)		최초	비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종류	위치	기정	변경	변경 후	결정일	고
기정	1	녹지	경관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43,111.0	-	43,111.0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변경	2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13,021.0	감) 8,089.9	4,931.1	"	
변경	3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11,755.0	감) 7,193.6	4,561.4	"	
변경	4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11,693.0	감) 7,120.6	4,572.4	"	
변경	5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31,986.0	감) 14,208.1	17,777.9	"	
변경	6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11,725.0	증) 6,296.1	18,021.1	"	
신설	7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-	증) 5,651.7	5,651.7	-	
신설	8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-	증) 5,053.5	5,053.5	-	
신설	9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_	증) 5,055.4	5,055.4	-	
신설	10	녹지	연결 녹지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-	증) 14,559.1	14,559.1	-	

2) 도로

□ 도로 총괄표(변경없음)

		합 겨	1		1 류			2 류			3 류	
류별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㎡)									
합계	2	3,012	140,677	_	_	_	2	3,012	140,677	_	-	_
광로	1	2,000	107,719	_	-	_	1	2,000	107,719	-	-	_
대로	1	1,012	32,958	-	-	I	1	1,012	32,958	-	-	-

□ 도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		ਜ	足			연장			사용	최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점	형태	결정일	비고
기정	광로	2	(신행B) 1	50	주간선 도로	2,000	대로 2-신항B1	소로1-1	일반 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
기정	대로	2	(신항B) 1	30	보조간선 도로	1,012	소로2-1	광로 2-신항B1	일반 도로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도시계획시설 (항만)중복결정

나. 유통 및 공급설비

- 1) 전기공급설비
- □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	도면				면적 (㎡)		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전기공급설비 (신항B) (변전시설)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2,635	_	2,635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.20.)	도시계획시설 (항만) 중복결정

- 다. 공공·문화 체육시설
 - 1) 공공청사
 - □ 공공청사 결정 조서(변경)

	도면		기원이			면적 (m²)			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변경	1)	공공청사 (신항B)	해양 경비 안전서	인천경제자유구 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29,839.0	감) 2.5	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(2019.520)	

[붙임 2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- 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
- 가. 교통시설
- 1) 도로
- 가) 도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등급	규 류별	모 번호	폭원 (m)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광로	2	(신항B) 1	50	주간선 도로	2,000	대로 2-신항B1	소로1-1	일반 도로	-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 (2019.5.20)	도시계획시설 (항만)중복결정
기정	대로	2	(신항B) 1	30	보조간 선 도로	1,012	소로1-1	광로 2-신항B1	일반 도로	-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 (2019.5.20)	도시계획시설 (항만)중복결정

나. 유통 및 공급시설

1) 전기공급설비

가)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7	도면				면적 (m²)		
분	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기 정	1	전기공급설비 (신항B) (변전시설)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2,635	_	2,635	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3호 (2019.5.20)	도시계획시설 (항만중복결정

다. 공공 · 문화 체육시설

1) 공공청사

가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マ	도면		시설의			면적 (㎡)		최초	
! 분	표시 번호	시설명	종류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변 경	1	공공청사 (신항B)	해양경비 안전서	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	29,839.0	감) 2.5	29,836.5		도시계획시설 (항만)중복결정

2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

가. 항만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	가구	-1 -1 (2)	3	획 지	
번호	번호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비고
합	계	957,174	- 957,174		
 ځL1	항1 957,174		항-1	478,571	A터미널
항1 	A.1	957,174	항-2	478,603	B터미널

나.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

1) 물류시설(변경)

도면	71 7	면적	(m²)		획지		
노먼 번호	가구 번호	7) ZI	변경	위	면적	(m²)	비고
린모	빈오	기정	변경	치	기정	변경	
힙	계	1,160,180.0	1,160,160.8		1,160,180.0	1,160,160.8	
				-1	12,817.0	12,817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12,817.0	12,817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1	D1	84,360.0	84,360.0	-3	16,818.0	16,81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16,818.0	16,81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5	25,090.0	25,09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	13,152.0	13,151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2	D2	52,507.0	52,502.3	-2	13,152.0	13,149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Z	D2	32,307.0	32,302.3	-3	13,152.0	13,151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13,051.0	13,05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	12,118.0	12,118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12,218.0	12,217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3	12,979.0	12,979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3	D3	193,273.0	193,272.9	-4	15,393.0	15,393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З	טט	133,273.0	195,212.9	-5	51,079.0	51,079.0	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5	31,079.0	(4,176.4)	역시 내 문할 것 복시 신 합성 등에 될 기 등
				-6	40,854.0	40,85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7	48,632.0	48,632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	18,620.0	18,62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4	D4 D4	74,067.0	74,067.0	-2	18,449.0	18,44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4		14,001.0	14,001.0	-3	18,620.0	18,62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18,378.0	18,37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5	D5	21,288.0	21,286.5	-1	10,644.0	10,643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<u></u>	טט	21,200.0	21,200.5	-2	10,644.0	10,642.6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
드래	71 7	면적	(m²)		획지		
도면	가구			위		(m²)	비고
번호	번호	기정	변경	치	기정	변경	
				-1	21,277.0	21,277.7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2	21,698.0	21,701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107,149.7	-3	16,529.0	16,527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6	D6	107,153.0		-4	16,529.0	16,52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טע	טע	107,133.0	107,149.7	-5	7,730.0	7,727.6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6	7,830.0	7,82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7	7,830.0	7,82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8	7,730.0	7,72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7	D7	34,851.0	34,851.0	-1	18,854.0	18,85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ا <i>ل</i>	D'	04,001.0	04,001.0	-2	15,997.0	15,997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1	19,580.0	19,58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8	D8	75,097.0	75,097.0	-2	16,599.0	16,59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טע	100	15,031.0	75,097.0	-3	19,580.0	19,580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4	19,338.0	19,33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1	13,412.0	13,411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2	13,652.0	13,65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3	6,116.0	6,115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9	D9	57,944.0	57,942.1	-4	6,216.0	6,214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5	6,216.0	6,216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6	6,216.0	6,214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7	6,116.0	6,116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49,258.0	-1	4,866.0	4,865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2	4,866.0	4,86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3	4,966.0	4,965.7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4	4,966.0	4,96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10	D10	49,260.0		-5	4,966.0	4,966.6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10		43,200.0		-6	4,966.0	4,966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7	4,966.0	4,965.7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8	4,966.0	4,96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9	4,866.0	4,866.6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0	4,866.0	4,866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1	6,616.0	6,615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2	6,616.0	6,61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3	6,716.0	6,715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4	6,716.0	6,71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D11	D11	66,760.0	66,759.6	-5	6,716.0	6,716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דדת	ונע	00,700.0	00,759.0	-6	6,716.0	6,716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7	6,716.0	6,715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8	6,716.0	6,715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9	6,616.0	6,617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기능
				-10	6,616.0	6,616.4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
<u>г</u> н	가구	면적	(m²)		획지		
도면 번호	기구 번호	기정	변경	위	면적	(m²)	비고
<u> </u>	빈오	7178	12/8	치	기정	변경	
				-1	3,550.0	3,549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3,650.0	3,650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3	3,650.0	3,650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3,650.0	3,650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5	6,658.0	6,659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6	34,963.0	34,962.1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12	D12	111,803.0	111,797.7	-7	11,800.0	11,79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8	22,724.0	22,724.4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9	3,550.0	3,548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0	3,650.0	3,64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1	3,650.0	3,64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2	3,650.0	3,649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3	6,658.0	6,656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	14,214.0	14,21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14,214.0	14,21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10	D10	110 107 0	110 107 0	-3	14,078.0	14,07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13	D13	113,167.0	113,167.0	-4	14,078.0	14,07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5	28,428.0	28,42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6	28,155.0	28,155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118,650.0	-1	59,434.0	59,434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D14	D14	118,650.0		-2	29,608.0	29,60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, , , , , ,		-3	29,608	29,608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
※ ()는 금회(1단계 2구역) 사업구역에 해당됨

2) 제조시설(변경없음)

	1	2-14-0		획지	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비고
합 계		147,229		147,229	
	M1		-1	36,25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N/1		147,229	-2	34,13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M1			-3	39,71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-4	37,117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
다. 업무 • 편의시설용지

1) 업무 · 편의시설용지(변경)

- nl	-1 7	면적	(m²)		획지		
노먼 번호	가구 번호	-7] -Z-J	배권	위	면적	(m²)	비고
민오	빈오	기정	변경	치	기정	변경	
합	계	109,372.0	109,371.8		109,372.0	109,371.8	
				-1	9,348.0	9,346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3,085.0	3,084.4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3	2,645.0	2,644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7,709.0	7,709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S1	S1	50,607.0	50,606.9	-5	9,355.0	9,354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31	31	30,007.0	30,000.9	-6	7,709.0	7,709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7	3,148.0	3,147.5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8	3,872.0	3,872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9	1,918.0	1,918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0	1,818.0	1,81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	3,014.0	3,014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2	4,030.0	4,031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3	3,702.0	3,701.0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4	8,079.0	8,078.2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5	7,840.0	7,838.7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S2	S2	58,765.0	58,764.9	-6	8,079.0	8,079.4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32	32	30,703.0	30,704.9	-7	8,064.0	8,063.6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8	2,015.0	2,015.3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9	4,048.0	4,048.1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0	4,048.0	4,048.8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1	3,931.0	3,929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				-12	1,915.0	1,915.9	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(공동개발) 가능

라. 기타 공공시설용지

1) 변전시설(변경없음)

		-1-1/ 2	Ş	획지	
도면번호	변번호 가구번호 면적(㎡) 위		위치	면적(m²)	비고
합	계	2,635.0	_	2,635.0	
E1	E1	2,635.0	_	2,635.0	

2) 해양경비안전서(변경)

		ाचे उसे (का		2)			
도면번호	도면번호가구번호		면적(㎡) ·		면적	(m²)	비고
		기정	변경 위치	기정	변경		
<u></u> 합계		29,839.0	29,836.5	-	29,839.0	29,836.5	
Gl	G1	29,839.0	29,836.5	_	29,839.0	29,836.5	

3) 주차장(변경)

		т і 7-	면적(㎡)		획지		
도면번호	가구번호	민식	J(m)	6) 5)	면적(m²)		비고
		기정	변경	위치	기정	변경	
합	계	12,930.0	12,929.0	-	12,930.0	12,929.0	
P1	P1	4,965.0	4,964.5	_	4,965.0	4,964.5	
P2	P2	4,965.0	4,964.5	_	4,965.0	4,964.5	
P3	P3	3,000.0	3,000,0	_	3,000.0	3,000,0	

3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항만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	분	계획내용				
		용도	용 당 불 당	 운수시설 중 '항만시설' 「항만법」제2조제5호의 나목(기능시설) 「항만법」제2조제5호의 다목(지원시설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조제3호의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				
		거피	물 용도 태율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70% 이하				
	항-1,	용적률		· 120% 이하				
항1	항-2	높	0]	• 50m 이하				
		배치		•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배치				
		쳥	태	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항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적용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권장				
		색	채	 「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」의 항만 및 물류 단지 색채계획 적용 연접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는 색채사용 권장 				
		건축	추선	-				

- 나.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
- 1) 물류시설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	분	계획내용
<u> 원모</u>			권장 용도	
		여 내	<i>와</i> 하 아	 『건축법』시행령[별표1]중 아래의 시설 ·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· 제8호 운수시설(공항시설 제외) ·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· 제17호 공장(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) ·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·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『항만법』제2조 제5호 "다"목(지원시설)중 (6)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
			불허용도	•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	폐율	• 70% 이하
			적률	• 300% 이하
		盖	-0]	• 40m이하(단, D13, D14에 경우 권장용도 수용시 60m 이하)
D1 ~ D14	-	배	치	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,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 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교차로 가각부,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
		ਲੋਹ	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·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					
D1		색 채	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색채구분 색상 명도 / 채도 주조색 N7이상, G-PB 8이상 / 3이하 보조색 G-PB 4-7 / 2-6 강조색 G-PB 4-7 / 5-10 						
D1 ~ D14	_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· 폭원 50m 이상 도로변 : 15m						
		기타사항	 교통처리계획 ·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·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•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·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						

2) 제조시설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	_	용	권장 용도	 『건축법』시행령[별표1]제8호 운수시설 중 "라"목 항만시설로서『항만법』제2호 제5호 "다"목(지원시설)의 (3)화물의 조립·가공·포장·제조 등을 위한 시설 『건축법』시행령[별표1]제17호 공장(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)
M1			허용 용도	 『건축법』시행령[별표1]중 아래의 시설 ·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·제8호 운수시설(공항시설 제외) ·제18호 창고시설 ·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·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
			불허 용도	•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70% 이하
		용적률		• 300% 이하
		높 이		• 40m 이하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배치	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,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- 교차로 가각부,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-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
M1	-	형 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·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
		색 채	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색채구분 색상 명도 / 채도 주조색 N7이상, G-PB 8이상 / 3이하 보조색 G-PB 4-7 / 2-6 강조색 G-PB 4-7 / 5-10
		기타사항	 교통처리계획 ·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·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•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·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

나. 업무 · 편의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	위치	구분		계획내용
번호	11/1	1 4		
		용도	용 당 왕 발	 『건축법』시행령(별표1) 중 아래의 시설 ·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·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·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·제7호 판매시설(『인천시 도시계획조례』제43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) ·제10호 교육연구시설 ·제14호 업무시설 ·제15호 숙박시설(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) ·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) ·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) 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	용도	
		건 용 용 전	. –	• 70% 이하 • 350% 이하
		높		• 60m 이하
\$1 ~ \$2	_	明		 전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,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 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교차로 가각부,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 조경 설치를 권장
		정이	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·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

도면	위치	구분	계획내용
<u></u> 번호			
		형 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·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
S1 ~ S2		색 채	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색채구분 색상 명도 / 채도 주조색 N7이상, YR-GY 8이상 / 3이하 보조색 YR-GY 5-6 / 2-8 강조색 YR-GY 6-8 / 8-10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3m
		기타사항	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

다. 기타 공공시설용지

1) 변전시설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	-	용도	허용 용도	• 『건축법』시행령(별표1) 중 아래의 시설 ·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
E1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LI		건폐율		• 70% 이하
		용적률		• 150% 이하
		높 이		• 40m 이하

도면	月						
보고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			
		배치	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				
El	_	형 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·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				
		색 채	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색채구분 색상 명도 / 채도 주조색 N7이상, YR-GY 8이상 / 3이하 보조색 YR-GY 5-6 / 2-8 강조색 YR-GY 6-8 / 8-10			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3m				
		기타사항	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				

2) 해양경비안전서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		용도	허용 용도	• 『건축법』시행령(별표1) 중 아래의 시설 ·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
		9.7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되	테 율	• 70% 이하
		용경	적률	• 250% 이하
		높	ो	• 40m 이하
		배치		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
G1		ස්පි	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·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
			채	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색채구분 색상 명도 / 채도 주조색 N7이상, YR-GY 8이상 / 3이하 보조색 YR-GY 5-6 / 2-8 강조색 YR-GY 6-8 / 8-10
		건축	추선	• 건축한계선 : 3m
		기타	사항	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

3) 주차장(변경없음)

도면	위치	구분		계획내용	
번호	., ,	,		/ II ¬ - II O	
			허용	•『건축법』시행령(별표1) 중 아래의 시설	
		용도	용도	·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	
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되	폐율	• 70% 이하	
		용경	적률	• 350% 이하	
		높	ା	• 60m 이하	
		배	치	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「건축법」및「인천시 건축조례」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. 다만,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, 관리초소, GATE,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	
P1 ~ P3		්පිර	태	 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형태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조성 (단,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·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)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옥상조경 조성시옥상면적의 30%이상을 「건축법」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	
		색	채	•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•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색채구분색상 명도 / 채도주조색N7이상, YR-GY 8이상 / 3이하보조색YR-GY 5-6 / 2-8강조색YR-GY 6-8 / 8-10	
		건축	축선	• 건축한계선 : 3m	
		기타	-사항	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'차량진출입 불허구간'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	